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663호
개정	2006. 1. 11	조례 제 791호
	2006. 4. 12	조례 제 799호
	2006. 10. 13	조례 제 831호
	2006. 12. 29	조례 제 856호
전문 개정	2007. 7. 1	조례 제 884호
	2007. 12. 17	조례 제 910호
전문 개정	2008. 12. 29	조례 제 966호(제명 개정)
	2009. 6. 26	조례 제 1039호
개정	2009. 12. 29	조례 제 1059호
	2010. 2. 23	조례 제 1070호
	2010. 8. 2	조례 제 1091호
	2010. 12. 17	조례 제 1117호
	2011. 7. 8	조례 제 1155호
일부 개정	2011. 12. 15	조례 제 1192호
일부 개정	2012. 3. 2	조례 제 1216호
일부 개정	2012. 9. 6	조례 제 1243호
일부 개정	2013. 3. 6	조례 제 1273호
일부 개정	2013. 11. 1	조례 제 1329호
일부 개정	2014. 10. 6	조례 제 1386호
일부 개정	2015. 5. 18	조례 제 1453호
일부 개정	2016. 5. 27	조례 제 15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6>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구, 읍·면·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09. 12. 29, 2010. 8. 2, 2010. 12. 17, 2014. 10. 6, 2016. 5. 27>

1. 직속기관 : 농업기술센터,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2. 사업소 : 환경관리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3. 하부 행정기관 :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북동

제3조(국장 및 관·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관·담당관·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7>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보건소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읍·면·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5. 27]

제4조(소재지) 시 본청,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 본청

제5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문화국, 기획재정국, 복지여성국, 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3. 3. 6, 2013. 11. 1, 2014. 10. 6, 2016. 5. 27>

[전문개정 2010. 12. 17]

제6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3. 3. 6, 2014. 10. 6, 2016. 5. 27>

[전문개정 2010. 12. 17]

제7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문

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 교육, 직원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
2. 자치행정, 주민자치, 자치분권, 국내·외 교류, 마을공동체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무
4. 관광정책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
5.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
6.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7. 고객만족,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 5. 27]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정책기획과, 재정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조직관리, 시의회, 통계,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
2. 예산편성 및 집행, 투자심사,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무
3. 지출·계약,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무
4. 지방세, 자금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 5. 27]

제9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②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훈, 사회서비스, 생활보장 및 무한돌봄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무
3. 장애인복지, 장애인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무
4. 여성정책, 태교도시, 저출산, 다문화 및 청소년에 관한 사무
5. 아동복지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 5. 27]

제10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16. 5. 27>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일자리, 사회적경제, 고용, 소비자유통에 관한 사무
2. 투자유치, 기업SOS, 기업지원, 산업입지에 관한 사무
3. 농업, 농업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무
4. 축산, 가축환경, 동물보호 및 말산업육성에 관한 사무
5. 산림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 10. 6]

제11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3. 3. 6>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6, 2016. 5. 27>

1.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무
2.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
3. 건축에 관한 사무
4. 주택에 관한 사무
5. 지적,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 12. 17]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2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 5. 27>

1. 안전 및 재난·복구관리 총괄·조정, 민방위에 관한 사무
2. 도로, 교량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하천에 관한 사무
4. 공원·녹지 조성계획 수립·추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 10. 6]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0. 6, 2015. 5. 1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5조(센터에 두는 과) ① 센터에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를 둔다. <개정 2009. 12. 29>

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 3. 2>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무
2.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에 관한 사무
3.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자 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무
4.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5.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6. 농·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에 관한 사무
7. 농작물 병충해 예방·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8.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9.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10. 농촌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무

11.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육성에 관한 사무
12.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1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관한 사무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6조(상담소의 설치) 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 기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6>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3. 3. 6>]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0. 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0. 6, 2015. 5.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10. 6>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8조(소장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둔다. <개정 2009. 12. 29, 2013. 11. 1, 2014. 10. 6>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1. 1, 2014. 10. 6>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3. 3. 6>]

제1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 행정과를 둔다. <신설 2009. 12. 29>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29>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11. 1, 2015. 5. 18>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3. 3. 6>]

제4장 사업소

제20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4. 10. 6>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3. 3. 6>]

제2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 및 원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12. 17, 2014. 10. 6>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09. 12. 29, 2010. 12. 17, 2013. 3. 6, 2013. 11. 1, 2014. 10. 6, 2016. 5. 27>

1. 환경관리사업소

- 가. 환경보전 및 수질에 관한 사무
- 나.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무
- 다.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공사에 관한 사무
- 라.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
- 마. 대기에 관한 사무
- 바. 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무
- 사.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시설물관리, 재활용에 관한 사무
- 아. 위생관리, 위생지도 및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무

2. 교통관리사업소

- 가.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무
 - 나. 교통개선, 교통정보, 주차관리에 관한 사무
 - 다. 대중교통, 운수 및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사무
 - 라. 경량전철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 마. 차량등록,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에 관한 사무
3. 상수도사업소
-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 나. 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 다. 상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 라. 송·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무
 - 마. 정수의 생산·공급 및 수질시험에 관한 사무
 - 바.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 하수도사업소
- 가. 하수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나.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 다. 하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 라. 하수재생 및 물의 재이용 사업에 관한 사무
 - 마. 분뇨·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5. 평생교육원
- 가. 교육정책의 추진 및 학교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 나.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 도시 추진에 관한 사무
 - 다. 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무
 - 라. 도서 및 각종 기록물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무
 - 마.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무
 - 바.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0. 12. 17>
6. 삭제 <2009. 6. 26>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0. 6,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10. 6>

제24조(구청장) ①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14. 10. 6>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10. 6>

제25조(구에 두는 과)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처인구에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를 두고, 기흥구, 수지구에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를 둔다. <개정 2016. 5. 27>

[전문개정 2014. 10. 6]

제2절 읍·면·동

제2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개정 2014. 10. 6,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0. 6>

제27조(직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

무, 통·리·반장 조직운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는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10. 6>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9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44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7. 8, 2012. 3. 2, 2012. 9. 6, 2013. 3. 6, 2013. 11. 1, 2014. 10. 6, 2015. 5. 18, 2016. 5. 27>

1. 집행기관의 정원 : 2,41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1명

[전문개정 2010. 12. 17]

제30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1. 1]

제3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2013. 11. 1>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 11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12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3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업무”를 “주민생활지원업무”로 한다.

부칙 <2007. 7. 1 조례 제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담당간사”를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4호를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②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5인 이내”를 “40인 이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도시 4개”를 “자치행정, 주민생활지원, 산업정책, 도시주택, 건설교통 5개”로 한다.

③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조 중 “경제환경업무담당”을 “산업정책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용인시 주택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주택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기술지도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각각 한다.

제15조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공보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산업정책국”으로, 동호나목 중 “건설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동호다목 중 “도시환경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로, 동호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동호다목 내지 라목을 동호라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교통국에 속하는 사항

⑩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내무위원장”을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제3조의2제1항 중 “내무분과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한다.

⑪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환경사업소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동조 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산업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7. 12. 17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례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22명”을 “23명”으로 하고,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 규칙」”을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6. 26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9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3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1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행정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 중 “23명으로 하며”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로 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정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산업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업정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정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 산업정책”을 “문화복지, 경제환경”으로 한다.

⑥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 실·국장, 산업정책업무 담당 실·국장”을 “문화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경제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공보관,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정보문화기획단”을 “공보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복지국”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산업정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동호라목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다목 중 “건설사업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⑧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를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을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를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⑨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을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부칙 <2011. 7. 8 조례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라목 중 “각 구청(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을 “각 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시과, 건축과)”으로 한다.

부칙 <2011. 12. 15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직 전환대상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 수가 당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3. 2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6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6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5개”를 “자치행정(지역안보), 재정경제, 문화복지, 산업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6개”로 한다.

②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경제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을 “자치행정업무 실·국장, 문화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산업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은 “정보통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⑤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호, 제2호, 제3호의 “환경부서”를 각각 “녹색성장부서”로 한다.

⑫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건축기획담당” 및 “건축과장”을 각각 “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과장”으로 한다.

⑬ 「용인시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관사업추진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나목부터 라목을 다목부터 마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중 나목의 “경제환경국”을 “산업환경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다목의 “도시사업소”를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사업소”로 한다.

⑮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 11. 1 조례 제1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지역안보)”를 “안전행정(지역안보)”로 한다.

⑦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충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용인시자치행정국장”을 “용인시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부칙 <2014. 10. 6 조례 제1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산업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기획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행정문화

국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용인시안전행정국장”을 “용인시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재정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산업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도시사업소장”을 “기획재정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여성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 관련 업무 국·소장”으로 한다.

⑩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안전행정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정경제국”을 “행정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문화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환경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각 구청(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를 “각 구청(치인구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기흥구·수지구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도

시사업소”를 “교통관리사업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도시과, 건축과”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로 한다.

⑪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사업소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⑫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⑬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5. 5. 18 조례 제14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7 조례 제1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다목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②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위생축산과”를 “축산과”로, “문화관광과”를 각각 “문화예술과”로, “상하수행정과”를 각각 “수도행정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위생축산과”를 “위생과”로 한다.

⑤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각각 “상수도사업소”로 한다.

⑦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6. 5. 27>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용 인 시 청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농업 기술 센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용 인 시 환 경 관 리 사 업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 인 시 교 통 관 리 사 업 소	교 통 정 책 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대 중 교 통 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경 량 전 철 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차 량 등 록 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	
용 인 시 상 수 도 사 업 소	수 도 행 정 과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수 도 시 설 과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정 수 과	용인시 처인구 곡현로619번길 77	
용 인 시 하 수 도 사 업 소	하 수 재 생 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 수 시 설 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 수 운 영 과	용인시 처인구 옥현로 58	
용 인 시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동 부 도 서 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서 부 도 서 관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23	
용 인 시 치 인 구 청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용 인 시 기 흥 구 청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용 인 시 수 지 구 청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처 인 구	포 사 모 사 남 사 이 사 원 사 백 사 양 사 중 주 역 주 유 주 동 주	곡	읍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일원
		부	면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독점로	31-6	모현면 일원
		현	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 일원
		무	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	이동면 일원
		사	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	원삼면 일원
		무	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	백암면 일원
		동	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	양지면 일원
		무	면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78번길	7	김량장동, 남동 일원
		민	동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	역북동, 삼가동 일원	
		센	동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	유방동, 고탑동 일원	
기 홍 구	신 주 영 주 구 주 상 주 기 주 서 주 구 주 마 주 동 주 상 주 보 주	갈	동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	신갈동 일원
		민	동	용인시	기흥구	홍덕1로	13	하갈동, 영덕동 일원	
		센	동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23	구갈동 일원	
		터	동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일원	
		민	동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43번길	12-14	공세동, 고매동 일원
		센	동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94	농서동, 서천동 일원	
		터	동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77번길	17	언남동, 청덕동 일원
		민	동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	118번길	16	마북동 일원
		센	동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4	동백동, 중동 일원	
		터	동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3	상하동 일원	
		민	동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0	보정동 일원	
		센	터						
		터	동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수 지 구	풍 덕 천 1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	풍덕천동 일원
	풍 덕 천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1	풍덕천동 일원
	신 봉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15	신봉동 일원
	죽 전 1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	죽전동 일원
	죽 전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3	죽전동 일원
	동 천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83번길 40	동천동, 고기동 일원
	상 현 1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	상현동 일원
	상 현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8	상현동 일원
	성 복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0	성복동 일원

[별표 2] <개정 2014. 10. 6>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도시농업상담소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47	기흥구·수지구 관할 동지역
중 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	양지면, 중앙동, 역삼 동, 유림동, 동부동
북 부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모현면
남 사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
이 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	이동면
원 삼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춘로 7-1	원삼면
백 암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로 17-5	백암면

[별표 3] <개정 2014. 10. 6>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 관련)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치보건구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처인구 일원
기흥보건구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기흥구 일원
수지보건구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 일원
치인구 포곡읍지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일원
치인구 모현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독점로 31-6	모현면 일원
치인구 남사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 일원
치인구 이동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	이동면 일원
치인구 원삼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	원삼면 일원
치인구 백암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	백암면 일원
치인구 양지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	양지면 일원
원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421번길 8-1	원암리,진목리,전궁리 일원
아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남산로6번길 2	아곡리,완장리,창리 일원
죽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634	죽능리,목신리 일원
대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571번길 25	대대리,정수리,주북리 일원
백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797번길 48	백봉리,고안리 일원
장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599-3	장평리,용천리,옥산리,석천리 일원
가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로24번길 25	가창리 일원
고보건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713-1	고매1, 2, 4, 8통 농서1통
공보건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90번길 64	고매3, 5, 6, 7통 공세동 일원
고보건진료소	용인시 수지구 호수로 11-3	고기동 일원

[별표 4]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3조 관련)

구 명	관 할 구 역	비 고
처 인 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기 흥 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영덕동, 언남동, 마북동, 청덕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수 지 구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별표 5] <개정 2013. 11. 1>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0조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8% 이상	2%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6] <개정 2014. 10. 6>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1.5% 이내	7% 이내	25% 이내	32% 이내	27% 이내	7.4%이상	0.1% 이내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10% 이내	35% 이상	35% 이상	10% 이내	10% 이내

[별표 7] <개정 2016. 5. 2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1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2,441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2,393	-					
2급	1	1	-	-	-	-	-
4급	18	6	1	3	5	3	-
5급	119	36	3	6	17	26	31
6급 이하 계	2,255	-					
별정직 계	2	-	-	-	-	-	-
5급상당	-	-	-	-	-	-	-
6급상당 이하 계	2	-					
전문경력관 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	-	-	-	-	-	-
연구사	6	-					
지도직 계	37	-					
지도관	4	-	-	4	-	-	-
지도사	33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 8] 삭제 <2013. 11. 1>